

노인인권기본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19
----------	-------

발의연월일 : 2025. 11. 11.

발 의 자 : 남인순 · 김남근 · 김현정
손명수 · 백선희 · 전현희
김남희 · 이수진 · 서미화
윤종균 · 전진숙 · 송재봉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4년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렸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인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41.7명, 노인빈곤율은 약 40%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에서 의식주의 안정적 확보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노인의 존엄성, 독립성과 자주성, 돌봄받을 권리와 건강권, 참여권 등 노인의 인권신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함으로써 노인의 권

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노인의 인권을 신장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노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사회에 포용·통합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인권의 날로 함(안 제6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노인인권 증진에 대한 정책 개발 등에 노인과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노인인권을 위한 연구사업, 실태조사, 노인인권영향평가 및 노인인권통계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인권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노인에 대하여 안전한 삶을 유지할 권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자기결정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건강권,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등 노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노인인권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 영역에서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노인정책의 수립·조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존엄하고 독립한 인권의 주체로서 사회에 포용·통합되고 참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모든 형태의 학대·유기·방임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노인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돌봄 및 보호를 보장받는다.

④ 노인은 연령, 성별, 인종, 장애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으며, 권리실현에 있어 적극적 조치를 보장받는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연령차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하여 노인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괴롭힘
 - 나. 나이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합리성 또는 정당성이 없이 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
3. “교차차별”이란 나이와 성별, 인종, 장애, 출신 국가 등 다른 차별 사유가 중복 결합하여 노인에게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와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취약계층노인”이란 빈곤노인·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말한다.

제4조(노인의 권리) 노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1. 존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
2.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경제적 착취, 가혹행위·유기·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4.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5. 생애계획 및 일상생활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

위할 권리

6. 인간다운 생활과 건강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7. 인간다운 생활과 자아실현을 위한 안전한 환경의 일자리를 제공 받을 권리
8.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9. 노인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할 권리
10. 돌봄과 요양을 받을 권리
11.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한 교육, 문화, 예술을 향유할 권리
12. 격차 없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권리
13. 삶과 죽음에 관하여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14.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노인의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령차별 및 교차차별 등 노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 평등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정책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의 날) ①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존중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인권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노인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노인인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노인인권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노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노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노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인권 보장 목표와 방향
2. 노인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노인정책의 기본 방향
3.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4. 노인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정비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노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노인인권 증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5조에 따른 노인인권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노인인권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10조(노인과 시민사회 등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인과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노인과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2. 노인인권정책의 시행에 있어 시민사회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노인인권 보장에 관련된 노인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노인인권 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사업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노인인권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노인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제도 등이 노인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노인인권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노인인권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노인인권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노인인권정

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인의 인권에 관한 통계(이하 “노인인권 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노인인권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노인인권통계를 종합하여 제15조에 따른 노인인권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인인권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노인인권정책위원회 등

제15조(노인인권정책위원회) ①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노인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노인인권 증진, 차별금지, 특별한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인 학대방지 체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노인인권 관련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6. 노인인권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노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노인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
(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조정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
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노인의 권리 보장

제18조(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① 노인은 모든 형태의 학대·유기·방임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② 노인은 기후위기,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

③ 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자살과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① 노인은 연령차별과 교차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② 누구든지 노인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는 표현 또는 연령차별을 조장·정당화·강화하는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혐오표현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의 권

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과 교차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자기결정권) ① 노인은 노령,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본인의 삶에 대하여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② 누구든지 노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의 가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기타 의사결정지원자는 노인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인의 결정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① 노인은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② 노인은 주거·소득·취업·의료·교육 등의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고용촉진·직업안정·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건강권) ① 노인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노인은 거주지역 및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건강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노인은 모든 종류의 의료적 결정·치료·절차에 대하여 동의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확하고 알기쉬운 설명을 제공받고, 독립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④ 노인은 언제든지 제3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은 완화의료와 연명의료 등을 포함한 의료중단에 관하여 노인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3조(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① 노인은 거주지와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돌봄 및 요양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노인은 거주지역이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적절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보호자·간병인 등 모든 사람의 돌봄 권리의 보장과 안정적인 돌봄 및 요양서비스 환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돌봄, 생활공동체에서의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요양서비스가 인정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참여할 권리) ① 노인은 지역 및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에 관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노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교육, 문화 등의 향유) ① 노인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에 참여·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노인이 자신의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교육·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을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정책의 개발·추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자료교환, 공동 조사·연구,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